

光州廣域市西區廢棄物綜合處理센터造成特別會計設置 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

1996 年 12 月
社會都市委員會

1. 審査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6年 11月 6日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提出
및提出者

나. 回附日字 : 1996年 11月 20日

다. 上程日字 : 第61回 西區議會(定期會) 會期中
第7次 社會都市委員會(1996年 12月 23日 上程議決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清掃行政課長 吳 龍 洙)

가. 提案 事由

○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구성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비는 타회계 전입금과 기타 수입으로만 지출하고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코자 함.

나. 主要骨子

○ 제3조(세출) 주민 지원사업비는 타회계 전입금과 기타 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다.

○ 제4조(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운용)

- 징수관 및 경리관 : 사회산업국장

-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과 채무관리관 : 청소행정과장

- 지출원, 수입금 출납원 : 청소행정계장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金光泰)

- 폐기물종합처리센타 구성에 따른 제3조(세출) 내역중 제2호 주민 지원사업비 지원은 제2조(세입) 내역중 제3,5호 타회계 전입금과 기타 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다로 한정하여
- 제2조(세입) 내역중 제1, 2, 4호의 국·시비 보조금과 부담금은 주민 지원 사업비로 사용치 않도록 하였으며,
- 지방재정법 제112조에 의한 특별회계 관리 운영에 대한 회계 공무원 관직 지정으로 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임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략

5. 討論 要旨 : 생략

6. 審査 結果 : 원안 가결

7. 少數 意見 要旨 : 없음

8. 其他 事項 : 없음